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809 발의연월일: 2021. 6. 16.

발 의 자:민형배·신동근・박상혁

이정문 · 임종성 · 주철현

홍익표 · 임호선 · 이수진

이수진(비) · 변재일 · 김철민

이규민 • 김경만 • 소병훈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계좌이체 방식의 범행이 곤란해지자 전화로 피해자를 속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자금을 건네받는 '인출(대면) 편취' 수법이 2019년 대비 2020년 366%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.

하지만 '인출(대면) 편취'는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, 범죄이용 전화번호 중지(법 제13조의3)나 편취금액 입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(법 제4조)도 불가합니다.

이에 인출(대면) 편취 등 신·변종 수법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,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를 하여 범행 수단을 근절, 피해를 예방하고자 법률상 '전기통신금융사기'의 정의 확대를 확대하려 합니 다(안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). 법률 제 호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가목 중 "이체"를 "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"로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이체"를 "이체 또는 현금을 입·출금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전기통신금융사기"란 「전	2
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	
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	
인을 기망(欺罔)・공갈(恐喝)	
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	
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	
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	
목의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재	,,
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	
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	
되, 대출의 제공・알선・중개	
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.	
가. 자금을 송금· <u>이체</u> 하도록	가 <u>이체 또는</u>
하는 행위	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
나.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	나
금을 송금· <u>이체</u> 하는 행위	<u>이체 또는 현금</u>
	<u>을 입·출금</u>
2의2. ~ 7. (생 략)	2의2. ~ 7. (현행과 같음)